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131

발의년월일 : 2000년 1월 7일
발의자 : 정길자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·공포(대통령령 제16672호)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변경에 따라 인상을 조정과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중 "회의수당"을 "회기수당"으로 함. (안 조례제명)
- 나. 의정활동비 "350,000원"을 "550,000원"으로 인상 조정 함. (안 제2조 제1항)
- 다. "회의수당"을 "회기수당"으로 변경하고, "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0,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"를 "회기 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 70,000원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"로 함.
(안 제1조 및 제4조 제1항·제2항)
- 라. 회의수당의 지급중 "다만,"이하를 삭제하고, "회기중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"를 신설함. (안 제4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
 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·제2항
 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5·별표6
- 나. 기 타 : 없 음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제 2조 제1항중 “매월 350,000원”을 “매월 55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회기수당의 지급)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 70,000원을 곱한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②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일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: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	제명: <u>회기수당</u>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,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..... <u>회기수당</u>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①의원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<u>350,000원</u> 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 다만,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②(생략)	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
제4조(회의수당의 지급)①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<u>50,000원</u> 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일괄 지급한다.	제4조(회기수당의 지급)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 <u>70,000원</u> 을 곱한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②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일괄 지급한다.